

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
배 포 일	2020. 1. 2. / (총 4매)	담당부서	기초연금과
과 장	서 일 환	전 화	044-202-3670
담 당 자	변 종 석		044-202-3677

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(단독가구 기준)으로 오른다

- 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·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(부부가구 219만2000원→236만8000원)으로 올린다고 밝혔다.

○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%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*을 말하는 것으로, 공시가격변동,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.

* [소득인정액이란?]

-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, 근로소득 공제, 일반재산 공제,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

□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, 부부가구 236만 8000원으로 인상되면,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.

-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.
-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%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,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다.
 -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,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.
-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“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,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”고 말했다.
 - 또한 “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하위 40%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

< 참고 > 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

참고

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

□ [기초연금 지급대상]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%를 대상으로 지급

-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(**선정기준액**)을 매년 1월 발표하고,
 -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(**소득인정액**)이,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
- **[선정기준액]** 전체 노인의 70%를 선정하는 기준으로, 노인 소득재산 분포, 임금·지가·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

<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>

연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단독가구	100만원	119만원	131만원	137만원	148만원
부부가구	160만원	190만 4000원	209만 6000원	219만 2000원	236만 8000원

- **[소득인정액]**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
 - 소득은 근로·사업·재산·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, 재산은 일반재산·금융재산 등을 반영

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$$\begin{aligned}
 & \left\{ \begin{aligned} & \{(\text{일반재산} - \text{기본재산액 공제}^*) + (\text{금융재산} - 2,000\text{만원 공제}) - \text{부채}\} \times \text{소득환산율}(4\%) \div 12\text{개월} + P^{**} \\ & (\text{근로소득} - 96\text{만원 공제}) \times 70\% + \text{기타소득} \end{aligned} \right.
 \end{aligned}$$

* **(기본재산액) 주거유지 비용 공제**(대도시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)

** **(P값)**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**고급 회원권**(골프, 승마, 콘도 등) 및 **고급 자동차**(4,000만원 이상 혹은 3,000cc이상)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

□ [기초연금 신청방법]

-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·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,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
 -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'찾아뵙는 서비스'로,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
- *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: ☎ 1355
- 2020년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
 - * 만 65세 생일이 '20년 10월인 분은, '20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,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